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소방학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지원시설
 - 개원일 : 2008. 5. 1.
 - 근무인원 : 10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 1)
 - 모집정원 : 50명(6학급), 2018년 입소기준

구 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교실수	4	-	1	1	1	1
학급수	6	-	2	2	1	1
아동수	50	-	8	11	13	18
교사수	6	-	2	2	1	1

○ 위치도



- 1 배움관
- 2 창의관
- 3 다습관
- 4 쓱쓱어린이집
- 5 주차장
- 6 종합운동장
- 7 테니스장
- 8 서울연구원
- 9 데이터센터
- 10 소방학교
- 11 부대시설

- 전경사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9. 1.1 ~ 2023.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 단체 등

사. 소요예산 : 220,151천원(2018년)

○ 산출근거(인건비, 관리운영비,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170,238천원
 - ▶ 급여 : 11,753,000원*12월=141,036천원
 - ▶ 처우개선비 : 195,000원*12월=2,340천원
 - ▶ 보험 : 2,238,533원*12월=26,862천원
- 관리운영비(전기, 가스비 등) : 27,113천원
 - ▶ 전기요금 : 1,283,431원*12개월 = 15,401천원
 - ▶ 도시가스 : 301,110원*12개월 = 3,613천원
 - ▶ 건물관리비 : 674,917원*12개월 = 8,099천원
- 운영비 지원 : 22,800천원
 - ▶ 보육교사 중식비 : 25,000원*6명*12개월 = 1,800천원
 - ▶ 교재 교구비 :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 기능 보강비(에어컨청소, 개보수비 등) = 15,000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심의대상 제외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행정6급 남미라(☎ 02-3488-2032)